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사유

○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장애인 생산품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2015. 5. 28 ~ 2015. 6. 18(21일간))
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6.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사업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장애인 복지증진의 기본목표,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,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

-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, 장애인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, 장애인의 날 행사, 수화 및 점자 교육,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

-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

○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 사유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6조의4에 따라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중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○ 자활기금사업신설(안 제3조 제6호~제8호)

- 제6호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- 제7호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
- 제8호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26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[2015. 5. 28. ~ 6. 18.(21일간)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자활 기금을 활용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자활 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, 공익성이 높은 사업 지원,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조례로서

○ 상위법인「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정사유

○ 성주군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아동복지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
- 급식지원 사업

○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324,020천원 정도

다. 성별영향평가: 위원회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%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삽입 요청이 있었으나 미반영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. ~ 2015. 6. 17.)
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6.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성주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
-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,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,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위한 사항,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 사항 등 아동복지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- 어린이날 기념행사, 급식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아동복지법을 준용하였고, 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 보조사업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서

○ 상위법인「아동복지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

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사유

○「영유아보육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(안 제4조) :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용

○ 보육관련 보조사업 추가(안 제23조제2항제9호) :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 G81

되는 비용

○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사업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가능(안 제23조 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3,000천원 정도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. ~ 6. 17.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.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6.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 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보육관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성주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을 준용하였으며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례로서

○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안사유

○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·보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명칭변경 반영 (안 제3~7조) : 보육시설→어린이집, 성주군농정심의회→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5. 28~ 6. 17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역시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 되어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촌보육·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“보육시설”은 “어린이집“으로 ”보육시설의 장“은 ”어린이집 원장“으로 ”금융기관“을 ”바우처카드“로 ”성주군농정심의회“를 ”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”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

○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안사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(2014. 5. 28 개정, 2015. 7. 1 시행)됨에 따라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체계화,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,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6조).

나.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, 구성, 회의 및 운영세칙을 규정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산, 성인지 교육 등 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하여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양성평등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27,500천원 정도

다. 기타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 ~ 6. 17.)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.(2015. 5. 15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(2015. 5. 13)

○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주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,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,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- 본 조례안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
-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정책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산, 성인지 교육, 일·가정 양립 원,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등 성 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,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

○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인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